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1243호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6항에 따라 좌석형 및 일반형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운송사업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모집

나. 공고기간 : 2024. 5. 16. ~ 5. 30.

다. 운행형태 : 시내버스(좌석형 · 일반형)

라. 운임·요금 :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요금 준용

마. 운송개시 : 면허일로부터 3개월 이내('24. 10월 예정)

사. 사업범위 : 시내버스 7개 노선(좌석형 1개, 일반형 6개)

노선번호	노선유형	기 점	종 점	운행대수	운행횟수	배차간격	비고
221번	일반 (간선)	영종베네스트 위홈골든마레	인천공항T2	8	41	22~29	
2201번	일반 (지선)	영 종 역	신명스카이뷰	6	102	9~12	
4401번	일반 (지선)	송 도 제2차고지	인천포스코 고등학교	7	44	20~28	
4402번	일반 (지선)	셀트리온(주)	랜드마크시티 1호수변공원	5	41	20~31	(구) 순환47
9701번	일반 (지선)	독 정 역	계 양 역	6	45	20~27	
9901번	일반 (지선)	아이푸드파크 산업단지	검단LH 13단지	3	33	28~37	
9731번	좌석	왕 길 동	마곡나루역	5	30	30~40	

아. 운행차량 : 중형이상 승합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 혹은 수소버스 어느 하나로 도입 시 평가에 반영(평가표 참조)

자. 면허기간 : 3년(갱신 신청 시 각 3년 2회 연장 가능)

1) 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기간만료 후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만료일 3개월 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함

2) 향후 우리 시의 버스 운영제도 등이 변경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차. 재정지원

1)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재정지원 기준을 적용하며, 사업자의 운행실적에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한 총운송원가에 따른 수입금 배분 결과 발생하는 부족분에 대하여 인천시에서 재원을 지원함

카. 기타 명기되기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버스준공영제 이행협약서」,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을 따름

2. 사업신청 자격

가. 사업신청자

1) 공고일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기준에 적합하며 같은 법 제6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2) 사업신청자는 인천광역시에 주사무소를 둔 시내버스 면허업체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좌석형 또는 일반형 시내버스 2개 이상의 노선을 운행하고, 신설노선을 운행할 차량 및 차고지를 확보한 자 또는 운행개시 전까지 확보 가능한 자 이어야 함

나. 신청방법

1) 사업신청은 “시내버스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모집 제안요청서(이하 “제안요청서”라 함)”에 따라 운송사업자 대표 명의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사업신청자가 1개 이상의 노선에 대하여 중복 신청하는 경우, 희망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노선별로 사업제안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 운행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3) 사업제안서는 신청서, 서약서 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서식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여야 함

3. 사업신청서 제출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4. 5. 29.(수) ~ 5.31.(금) (09:00~17:00)

나. 장　　소 : 인천광역시 버스정책과(신관 10층)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FAX, 우편, 전자우편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라. 결과통보 : 2024년 6월 10일(예정)

4. 운송사업자 평가

가. 평가일시 : 2024. 6. 5.(수) 13:30(예정)

나. 평가장소 : 추후결정

※ 평가일시와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개별통보 예정

다. 평가방법

- 제출된 사업계획서 중 제안자격에 대한 제반사항을 우선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평가 실시
- 응모업체는 통보된 평가일시와 장소에서 발표자료(ppt)를 통해 제안 설명을 실시하여야 하며, 불참 시에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안설명은 15분(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5분) 이내로 하며, 응모업체의 정규직원이 실시하여야 함

※ 신청서 제출 시 제안설명자 인적사항 확인서류(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5. 운송사업자 결정

가. 신청서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여부 심사

나. 신청자가 1인일 경우 적격 여부 판정 후 결정(사업수행능력 평가 70점 이상)

다.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사업수행능력 평가)를 거쳐 총 점수 중 70점 이상 받은 업체 중 최고득점자를 선정, 최고득점자가 2개 업체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

- 선정된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수행 내용을 바탕으로 운행여건 등에 따라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라. 신청자가 없을 경우 재공모 실시

마.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 지정 후 30일 이상 운송개시에 필요한 사항을 지연 또는 기피할 경우 사업자 지정을 취소

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최종순위를 제외하고는 평가과정, 평가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않음

6. 사업계획 신청시 구비서류

가. 사업신청서류 1부(원본 / 좌철제본)

- 사업신청서
- 위임장
- 사용인감계
- 서약서
- 청렴이행 서약서

나. 제안서(정량적 평가서) 3부(원본 1부, 사본 2부 / 좌철제본)

- 사업신청자 현황
- 사업신청자 사업장 현황
- 사업신청자 경영관리 지표
- 운행실적
- 노선중복도 관련 유사노선 운행계통

다. 제안서(정성적 평가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좌철제본)

- 사업계획서
- 차량 확보 계획서
- 차고지·운송부대시설 확보계획
- 운수종사자 확보 및 교육계획
- 운행 및 안전 관리계획
- 경영 및 서비스 개선계획
- 운송사업 차별화 방안

※ 모든 항목에 대한 부속 및 증빙서류 첨부 必 / 미비할 경우 점수 미반영

7. 기타 이행(준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운송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나. 면허신청자는 시내버스 한정면허 노선(안)을 참고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다. 선정업체는 면허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운행 개시

라. 운송사업자로 결정된 자(업체)가 운행개시일에 운행을 하지 못할 경우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 시의 차 순위자를 사업자로 선정 할 수 있음

마. 공모참가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자가 부담함

바.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붙임서식에 작성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및 부속서류는 전부 제출되어야 해당 내용을 인정하며, 미 제출시 불인정함

사. 공고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제반 규정에 의함

아. 이 건 공고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의 의견을 따라야 함

자. 신청자는 공고내용과 관련사항을 신청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공모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사업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인천광역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아. 기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인천광역시(버스정책과)를 방문하시거나, 문의(032-440-3952) 하여 주시기 바람